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기능을 교육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정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1명, 9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교육부로 이체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보건복지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육을 포함한다”를 “보육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3명”을 각각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 31호부터 제4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후단 중 “81명”을 “78명”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870”을 “836”으로 하고, 별정직 계 “6”을 “5”로 하며,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5”를 “4”로 하고, 일반직 계 “860”을 “827”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5”를 “24”로, 3급 또는 4급 이하 “829”를 “797”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1명, 9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

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체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직무) 보건복지부는 생활보호 · 자활지원 · 사회보장 · 아동(영 · 유아 <u>보육을 포함한다</u>) · 노인 · 장애인 · 보건위생 · 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직무) ----- ----- ----- <u>보육은 제외한다</u> ----- ----- ----- -----.
제11조(인구정책실) ① 인구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u>3명</u> 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u>3명</u>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0의5. (생략) 30의6. ~ 30의13. 삭제 31. <u>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 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협의 · 조정 총괄</u> 32. <u>영유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u> 33. <u>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u>	제11조(인구정책실) ① ----- ----- ----- <u>2명</u> -----. ② ----- <u>2명</u> ----- ----- -----. ③ ----- --. 1. ~ 30의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34. <u>보육행정 전산화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관리</u>	<u><삭 제></u>
35. <u>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u>	<u><삭 제></u>
36. <u>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u>	<u><삭 제></u>
37. <u>영아·장애아·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취약보육 서비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u>	<u><삭 제></u>
38. <u>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u>	<u><삭 제></u>
39. <u>어린이집의 평가인증</u>	<u><삭 제></u>
40. <u>국공립어린이집 등의 확충 및 환경개선</u>	<u><삭 제></u>
41. <u>어린이집의 설치 및 인가 기준에 관한 사항</u>	<u><삭 제></u>
42. <u>어린이집의 지원 및 지도·감독</u>	<u><삭 제></u>
제41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u>81명</u> 을, 3	제41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78명</u> -----

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삭 제 ④ (생 략)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4]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70</u>	<u>836</u>	-34
•	•	•	
•	•	•	
별정직 계	<u>6</u>	<u>5</u>	-1
•	•	•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u>5</u>	<u>4</u>	-1
일반직 계	<u>860</u>	<u>827</u>	-33
고위공무원단	<u>25</u>	<u>24</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29</u>	<u>797</u>	-32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0